

(붙임 1)



2025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3월 31일 까지

<지역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2025년 4월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장 만 선

목 차

I.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II.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신용(금융)사업
4. 기타사업

III. 주요사업 추진 실적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I .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5.02.18.	61	의안 제1호 :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의안 제2호 : 2024년도(제64기) 결산보고서(안) 승인의 건
		의안 제3호 :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5.01.08.	11	의안 제1호 : 제 위원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면목지점 임대차계약 연장 승인의 건
25.01.23.	11	의안 제1호 : 2025년도 각종 차입금 최고한도 승인의 건
		의안 제2호 : 출자등기 변경의 건
		의안 제3호 : 특별성과급 지급 기준 제정의 건
		의안 제4호 : 2024년도(제64기) 결산보고서(안) 심의의 건
		의안 제5호 : 2024년도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방법 결정의 건
		의안 제6호 : 정관 변경(안) 심의의 건
		의안 제7호 :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
		의안 제8호 :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개정(안) 심의의 건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결사항
25.02.28.	11	의안 제1호 : 조합원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의 건
		의안 제2호 : 탈퇴조합원 지분 선급의 건
		의안 제3호 : 제위원 선임의 건
		의안 제4호 : 제규정 개정의 건
25.03.28.	11	의안 제1호 : 조합원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의 건
		의안 제2호 : 용마지점 임대차계약 변경 승인의 건
		의안 제3호 : 대의원 선거일 지정의 건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점 (경제지원센터)		02137 (02052)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0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39길 32)	433-9121 (432-9352)
면 목 지점		02162	서울 중랑구 검재로 229	433-2801
장안동 지점		02534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93	2244-4247
답십리 지점		02621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30	2244-7194
용 마 지점		02250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07	2208-6561
신 내 지점		02054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211	3423-1500
상 봉 지점		02137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0	433-9121
망 우 지점		02066	서울 중랑구 망우로 489	433-8020
창신동 지점		03121	서울 종로구 종로 328	741-2110
안 암 지점		02578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97	951-5760
홍 릉 지점		02480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28 성일빌딩1층	959-9501
동 부 지점		02129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45	2207-1520
양 원 지점		02057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670 씨동 245호	2207-1590
하나로 마트 분사	신내점	02067	서울 중랑구 신내로 74	493-3080
	장안점	02534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93	2244-2834
	망우점	02066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18길 94	433-8022

나. 인원 현황

구 분		'24년말(A)	'25.3월말(B)	증감(B-A)	비 고	
임 원		조합장	1	1	0	
		감 사	1	1	0	
		이 사	9	9	0	
		상임감사	1	1	0	
		상임이사	1	1	0	
		계	13	13	0	
직 원	정규직	책임자	48	51	3	
		직 원	65	62	-3	
	비정규직	계약직 등	37	37	0	
	계		150	150	0	

3. 정관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구역 (§4)	우리 조합의 구역은 중량구, 동대문구 일원과, 성동구 용답동 일원, 종로구 창신동 일원, 송인동 일원, 성북구 보문동 일원으로 한다.	우리 조합의 구역은 중량구, 동대문구, <u>성동구, 종로구, 성북구 일원</u> 으로 한다.	
영농회별 대의원수 (§46③)	묵동 대의원수 : 2명 중화동 대의원수 : 3명	묵동 대의원수 : <u>3명</u> 중화동 대의원수 : <u>2명</u>	

구 분	현 행	개 정	위탁 선거법
조합장 선거일 (§65⑥)	○ 임기만료연도 3월 中 <u>두번째</u> 수요일	○ 임기만료연도 3월 中 <u>첫번째</u> 수요일	§14①
조합장 선거 공고 (§71·72)	○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의 공고 주체 - <u>관할위원회</u> (선거일 전 20일)	○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의 공고 주체 - <u>조합</u> (선거일 전 20일)	
선거인 명부 (§72)	○ 조합은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시 선거인명부 등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 <u><신 설></u>	○ 조합은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시 선거인명부 등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 <u>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전산자료 복사본 제출 시 선거인명부 등본 미제출 가능</u>	§15③
	○ 선거인명부열람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u>선거일전 11일까지</u> ※ 4일간 열람	○ 선거인명부열람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u>3일간*</u> *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공휴일 포함)	§16①
	○ <u><신 설></u>	○ <u>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 (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원명부 정비</u>	§15④
	○ <u><신 설></u>	○ <u>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시 조합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가능</u>	§15⑤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74② §75④ 별표)	○ <u><신 설></u>	○ <u>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경찰서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및 후보자등록시 범죄경력 제출</u>	§18④
	○ <u><신 설></u>	○ <u>관할위원회는 필요 시 제출된 범죄경력에 대해 관할검찰청장에게조회 가능</u>	§18⑥

구 분	현 행	개 정	위탁 선거법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76①)	○ <u>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u>	○ <u>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때</u> - <u>피선거권 없음</u> - <u>후보자등록 관련 서류 미제출 시</u> - <u>범죄경력 미개재 선거공보 제출 시 또는</u> <u>범죄경력 서류 미제출 시</u>	§19①
선거운동 주체 (§77의2①, §77 의9, §77의10)	○ 후보자 ○ <신 설>	○ 후보자 ○ <u>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u> <u>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u>	§24①
	○ <신 설>	○ <u>예비후보자</u> <u>(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신청 가능)</u>	§24의2
	○ <신 설>	○ <u>활동보조인</u> <u>(장애인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경우)</u> - <u>(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u> <u>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u>	§24의3
선거공보 (§77의3)	○ <신 설>	○ <u>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개재</u> <u>(선거공보 미제출 시 범죄경력 서류 별도 제출)</u>	§25②
	○ <u>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u> <u>선거인에게 발송</u>	○ <u>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는</u> <u>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u> <u>선거인에게 발송</u>	§25③
	○ <u>선거인은 선거공보 관련 이의제기 가능</u>	○ <u>후보자 및 선거인</u> 은 선거공보 관련 이의제기 가능	§25⑥
선거벽보 첩부장소 (§77의4)	○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u>게시판</u>	○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u>게시판 및 관할위원회와 조합이 협의한 장소</u>	§26②
정보통신망 이용 (§77의7)	○ <u>후보자는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u> <u>홈페이지의 게시판</u>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u>후보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u> 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29①

구 분	현 행	개 정	위탁 선거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77의11)	○ <신 설>	○ <u>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절차</u> - <u>후보자가 조합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u> - <u>조합은 제공 요청 전 조합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사실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고지(조합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제공 불가)</u> - <u>조합은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 요청</u> - <u>조합은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신청 후보자 및 다른 후보자에게 제공 가능</u> ○ <u>후보자의 금지행위</u> - <u>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u> - <u>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u> ○ <u>비용부담 주체 : 조합</u>	§30의3
공개행사 정책발표 (§77의12)	○ <신 설>	○ <u>(예비)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서 정책 발표 가능</u> - <u>조합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공개행사 일시와 소견 발표 가능시간 공고</u>	§30의4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대상 (§77의14 I , III)	○ 선거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및 그 가족	○ 선거인, <u>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자 및 가입신청을 한 자)</u> 및 그 가족	§58
	○ <신 설>	○ <u>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금품 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u>	§24의3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선거인 범위 (§77의20 I)	○ 선거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및 그 가족	○ 선거인, <u>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자 및 가입신청을 한 자)</u> 및 그 가족	§32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의례적 행위 (§77의21①)	○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u>화환·화분 제외</u>)하는 행위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하·부의금품을 제공 (<u>화환·화분 제외</u>)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u>화환·화분 포함</u>)하는 행위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하·부의금품을 제공(<u>화환·화분 포함</u>)하는 행위	§33①

구 분	현 행	개 정	위탁 선거법
기부행위 명의표시방법 (§77의21②)	○ <신 설>	○ <u>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함</u> - <u>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u> * 종전의 대상범위 등을 법령·정관 등의 재개정 없이 확대 변경 시, 조합장 업적홍보 등 부가 시	§33②
기부행위 제한기간 (§77의22)	○ 임기만료일 전 <u>180</u> 일부터 선거일까지	○ 임기만료일 전 <u>1년</u> 부터 선거일까지	§34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소 설치기준 (§79의2)	○ 읍·면·동마다 1개소씩 투표소 설치·운영 - <신 설>	○ 읍·면·동마다 1개소씩 투표소 설치·운영 - <u>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투표소 설치 가능</u>	§41①
투·개표 참관인 자격 (§81①)	○ 선거인	○ <u>조합원</u>	§45①
조합장 선출방식 변경 시기 (§54① 비고)	○ <신 설>	○ <u>조합장 선출방식 변경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직전년도 12월까지 가능</u>	
임원의 임기 (§55)	○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 : 전임자의 잔임기간	○ <u>보궐선거·재선거</u> 에 따른 임원의 임기 : 전임자의 잔임기간	
임원의 결격사유 중 사업이용 실적 관련 (§56)	○ 사업이용실적 변경시 경과규정 -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 적용 ○ <신 설>	○ 사업이용실적 변경시 경과규정 - <u>개정규정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u> ○ 임원의 사업이용실적 확인 시점 - <u>6월말·12월말 단, 필요시 추가 확인</u>	
상임이사 선출방법 (§114)	○ <u>1개의 의안</u> 으로 총회에 부의 <단서 신설>	○ <u>단수 또는 복수의 의안</u> 으로 총회에 부의 <u>단,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 가능</u>	
공고방법 (§7)	○ <u>서면</u>	○ <u>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전자우편 전송 등</u>	
준법점검 실시 (§143의2)	○ <신 설>	○ <u>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 지정 및 준법점검 실시</u>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청년이사 도입 (§101①, §105③)	○ <신 설>	○ <u>조합 여건에 따라 청년이사*</u> 도입 가능 * 청년조합원(선거공고일 기준 만 00세 미만)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	
(준)조합원 가입신청 (§10①Ⅱ, §16①Ⅱ)	○ 가입신청서에 <u>가구원수 기재</u>	○ 가입신청서에 <u>가구원수 미기재</u>	농협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투표소 설치구역 관련 근거 법령정비 (§79의2①)	○ 「 <u>지방자치법</u> 」§4의2	○ 「 <u>지방자치법</u>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선거운동 관련용어 정비 (§98의2⑤)	○ <u>사위의</u> 방법	○ <u>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u> 방법	농협법 개정사항 반영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 조합원 생일축하 기념 상품권 지급
 - 생일을 맞이하신 조합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농협 사업 이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상품권 및 장수를 기원하는 선물을 지급.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 영농철 농작업 중 안전사고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영농활동 활성화를 도모.
- 설맞이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조합원 지원사업 실시
 -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조합원님들께 명절 인사를 전달하고 경제사업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합원 지원 사업을 실시.
- 신규 조합원 교육 실시
 - 2024년에 가입하신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협 이념에 대한 이해 증진, 협동정신의 고취, 동서울농협 사업 소개를 통한 사업 이용량 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 조합원 교육을 실시.
- 창립기념일 맞이 조합원 지원사업 실시
 - 창립 61주년을 맞이하여 농협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조합원 지원 사업을 실시.
- 조합원 영농회별 간담회 실시
 - 우리 농협 현황에 대한 설명 및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조합원의 권익 신장, 농협에 대한 이해 증진, 더 나아가 조합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합원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
- 18기 여성대학 개강
 -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여성리더를 육성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농협 사업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18기 여성대학을 개강.

2. 경제(유통)사업

○ 행사명 : 『나로가 설계한 완벽한 할인!』

- 기간 : 25. 1. 14.(화) ~ 1. 28.(화), 15일간
- 목적 : 설 명절 특판(선물세트 및 성수용품) 사전예약 홍보 및 우리 농산물 할인행사를 통한 판매촉진 강화.
쌀 가공품 모음, 살맛나게 등 다양한 할인행사로 고객수 및 매출증대 기여.

○ 행사명 : 『둥근둥근 대보름 두근두근 대할인』

- 기간 : 25. 2. 6.(목) ~ 2. 19.(수), 14일간
- 목적 : 정월대보름 모음전, 발렌타인 초콜릿 특가 등 다양한 기획전 추진,
인기상품 특별할인을 통해 소비진작 유도.

○ 행사명 : 『The 맛있는 신선평가』

- 기간 : 25. 2. 20.(목) ~ 3. 5.(수), 14일간
- 목적 : 삼겹살 DAY, 봄김치 담그기, 밥심쌀심, 새학기 준비물 등 다양한 기획전 추진, 인기상품 특별할인을 통해 하나로마트 이미지 제고.

○ 행사명 : 『더욱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 기간 : 25. 3. 6.(목) ~ 3. 19.(수), 14일간
- 목적 : 제철 농산물, 봄나물 무침, 화이트DAY, 봄맞이 청소용품 등 다양한 할인기획전 추진.

○ 행사명 : 『동서울농협 창립61주년 특별사은행사』

- 기간 : 25. 3. 20.(목) ~ 4. 2.(수), 14일간
- 목적 : 정육, 과일, 채소, 미곡 50% 할인행사.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
전단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 유도 및 동서울농협 홍보.

3. 신용(금융)사업

○ 신용자산 현황

- 예수금 2조 1,416억원 달성, 상호금융대출금 1조 6,250억원 달성.
- 전년말 대비 예수금 4.96% 성장, 대출금 7.36% 성장.
- 연체대출금 비율 2.59%로 농축협 전국 평균 4.81% 대비 2.22%p 양호한 자산건전성 보유.

○ 손익 현황

- 매출총이익 135억원 달성, 당기순이익 73억원 달성.
- 전년동기 대비 매출총이익 13.18% 성장, 당기순이익 48.84% 성장.

○ 금융감독원 농축협 경영실태평가 1등급

- 총자본비율(농축협의 공식적인 BIS비율) 10.66%, 순자본비율 7.00%이며, 총자본비율의 감독규제비율 8%, 순자본비율의 감독규제비율 5%를 충족시키는 양호한 자본비율 보유.

4. 기타사업

○ 도농상생공동사업 추진

- 경기도 포천시 소재 관인농협과 우리 농협이 보유중인 유희시설을 이용한 유통채널제공형 도농상생공동사업 추진.
- 전북 순창군 소재 순창군조공법인과 지분출자형 도농상생공동사업 추진.
- 산지 농협, 조공법인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도시농협의 역할 제고.

○ 동서울농협 신사업 추진

- 신용·경제사업 이외 우리 농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사업 추진.
- 하나로마트 망우점 2층에 떡 제조설비 구비 및 떡 제품을 생산하여 쌀소비 촉진을 장려하고 농협의 가치를 실현.
- 결혼적령기 조합원 및 (손)자녀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남을 지원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동서울농협의 고객층을 확장시키기 위한 결혼만남지원사업 준비 중.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5년 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전년도말 (E)	전년도말 대비	
						증 감	성장률		증 감	성장률
경제사업		39,220	8,816	22.48	9,386	-570	-6.08	38,927	-30,111	-77.35
판 매		3,199	161	5.02	669	-508	-75.99	4,573	-4,412	-96.48
구 매		1,001	134	13.29	204	-70	-34.61	825	-691	-83.87
마 트		35,000	8,517	24.34	8,508	9	0.11	33,510	-24,993	-74.58
가 공		0	0	0.00	0	0	0.00	0	0	0.00
기 타		20	4	21.52	5	-1	-12.83	19	-15	-76.56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2,132,473	2,141,599	100.43	1,892,328	249,271	13.17	2,040,345	101,254	4.96
	평잔	2,030,482	2,080,050	102.44	1,794,394	285,656	15.92	1,917,670	162,380	8.47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1,571,529	1,625,006	103.40	1,452,218	172,788	11.90	1,513,629	111,377	7.36
	평잔	1,532,707	1,558,924	101.71	1,422,104	136,820	9.62	1,457,314	101,610	6.97
보험료		17,500	4,432	25.32	4,329	103	2.36	17,480	-13,048	-74.65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유동자산	34,936	I.유동부채	36,931
현금	5,753	외상매입금	596
외상매출금	801	단기차입금	3,552
재고,생물자산	1,267	기타유동부채	32,783
기타유동자산	27,115	II.금융업예수금	2,141,599
II.금융업예치금	575,585	III.금융업차입금	14,039
III.금융업대출채권*	1,589,491	IV.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0
IV.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0	V.비유동부채	846
V.비유동자산	130,259	장기차입금	0
투자자산	80,285	기타비유동부채	846
유형자산	40,284	부채 합계	2,193,415
무형자산	0	I.출자금	26,434
기타비유동자산	9,690	II.자본잉여금	3,310
		III.자본조정	-48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05
		V.이익잉여금	105,355
		자본 합계	136,856
자산 총계	2,330,271	부채와 자본 총계	2,330,271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3월말 (A)	'25년 3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34,469	35,662	1,193
영업비용	22,582	22,209	-373
매출총이익	11,887	13,453	1,566
신용사업	10,337	11,875	1,538
경제사업	1,550	1,578	28
판매비와관리비	6,795	6,869	74
영업손익	5,092	6,584	1,492
교육지원사업준비	136	196	60
영업외손익	-76	876	952
법인세차감전손익	4,880	7,264	2,384
법인세비용	0	0	0
당기순손익	4,880	7,264	2,384